

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1996. 6.
제출자 : 이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(법률 제4914호 '95. 1. 5)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,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지식보급 및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함(안 제3조).
- 다.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·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함 (안 제8조).

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.

1. 시민 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
2.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
3. 기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협의회의 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은 부시장으로 한다.
-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1. 학계·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
 2. 관련 공무원
- ④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협의회의 회의등)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.

-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-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계약중인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그 계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간사는 보전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.

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④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직원으로 할 수 있다.

제8조(협의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천운동등의 전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등) 협의회·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운동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